

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별표6 산업단지 관리권한 위임·위탁기관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

일련 번호	단 지 별	위임·위탁 기관	근거 및 적용법규
3	현도지방산업단지	현도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	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30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.